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의안번호 제4924호)

2026. 3.

교육안전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924호
-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2월 27일
- 회부일자 : 2026년 3월 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에서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안)에 맞게 개정(안 제5조제4항)

-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통합운영 규정(안 제5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붙임 3)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2)

2) 입법예고: 2026. 1. 8. ~ 1. 28.(2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1. 8. ~ 1. 28.(20일)

나)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없음, 법무혁신담당관-365(2026.1.12.)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감사위원회-481(2026.1.14.)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인구여성가족과-1843(2026.1.23.)

4)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4)

5)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 해당 없음

6)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법무혁신담당관-1515(2026.2.11.)

7) 관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재난피해자 지원 임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 단계까지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재난피해자 지원 임무 명시(안 제5조제2항제7호)

-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
- 이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의 범위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함

나.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체계 개편(안 제5조제4항)

- 통합지원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명칭과 구성을 기존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에서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으로 개편함

- 이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 관리, 현장 대응 활동, 인력·장비 등 자원 지원, 주민 및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체계로 재구성함으로써, 실무반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도록 함

다.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항)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연계·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

- 조례에서 사용하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변경하고, 정의 규정에서 재난관리 책임 주체의 범위를 “기관”에서 “기관·단체·법인”으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상 용어 체계와 일치시키도록 함

3.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

로, 재난현장 대응 기능과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을 현장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재난 발생 초기부터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재난 대응 체계의 연속성과 현장 중심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한편, 실무반을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체계로 재구성한 것은 행정안전부 참고조례 및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표준편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난 대응 조직 운영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안은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제로 통합 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 두 조례안이 동일 회기 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통합 운영 규정은 관련 조례안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일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첨부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현행조례

문 의 처
044)300-75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위하여 제3조에 따른”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기관·단체·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을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u>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u> 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u>재난관리책임기관</u> ----- ----- -----.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세종특별자치시 <u>재난안전대책본부</u>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재난의 상황전파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2. ----- ----- <u>재난안전대책본부</u> ----- ----- ----- <u>위하여</u> ----- ----- -----.
3. “ <u>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u>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u>재난관리책임기관</u> 을 말한다.	3. “ <u>재난관리책임기관</u>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 ----- ----- <u>기관·단체·법인</u> ----- -----.

4.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의 대응단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 4. (생략)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생략)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4.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3조(재난현장의 대응단계) ---

-----.

1. -----
----- 재난관리책임기관-----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재난관리책임기관 -----

4. 재난관리책임기관 -----

5.·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생 략)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6조(업무연락관의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5.·6. (현행과 같음)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연락관의 파견) ①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재난관리책임기관-----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의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현장책임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의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

②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의 통보)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9조(재난현장의 상황전파) ① -

----- 재난관리책임기관-----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여야 한다.

제11조(재난현장 상황의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 상황의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

-----.

제11조(재난현장 상황의 정보공유)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12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

-- 재난관리책임기관-----

-----.

②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13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14조(재난현장 상황의 파악 및 통보)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

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
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
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
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
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
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
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의 통제) ① 통합
지원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
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
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
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의
지원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지역재난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제16조(재난현장의 통제) ① ---

----- 재난관리책임
기관 ----
-----.

②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제19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의
지원요청) ① -----

----- 재난관리책

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 하여야 한다.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임기관-----
---.

②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

----- 재난관리책임기관---

-----.

② (현행과 같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자연재난과장 엄 충 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재난의 상황전파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4.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으

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의 대응단계)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현장책임관의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 발생한 재난의 경우(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붕괴된 경우<개정, 2024. 9. 30.>
5. 주요 하천에서 다량의 유류·유해물질이 유출된 경우
6. 신종 감염병이 최초로 발생하거나 법정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7. 홍수, 제방 붕괴 등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홍수,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현장책임관과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 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본부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연락관의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책임관의 지정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장책임자의 지휘 총괄 등을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의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현장책임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의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의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에서의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상황의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에서의 조치

제13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 상황의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의 통제)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의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의 긴급복구

제18조(재난현장 기반시설의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의 지원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의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의 긴급복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

제21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
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
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
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59호,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제13조제2항에 따라”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부 칙<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 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